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유로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2 월 14 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업데이트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02 월 14 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

에 관한 사항	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3.16%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2.57%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투자신탁(제 1 호)[국공채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2 월 14 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업데이트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02 월 14 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

에 관한 사항	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.41%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.53%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 2015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2 월 14 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업데이트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02 월 14 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

에 관한 사항	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.76%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.99%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FirstClass 연금증권자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보수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2 월 14 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39 조(보수)	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5.40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9.50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40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8	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5.40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9.50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0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8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(연간, %)** **판매 수수료** / **총 보수** / **판매 보수** 없음 / 1.548 / 0.950	**투자비용** (업데이트) **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(연간, %)** **판매 수수료** / **총 보수** / **판매 보수** 없음 / 1.538 / 0.950

	1,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1,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02 월 14 일 - 보수 변경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(단위: 1,000 원)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(단위: 1,000 원) (업데이트)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전

집합투자업자 보수	판매회사보수	수탁회사보수	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	**총 보수**	**총보수·비용** 주 2)
0.5400	0.9500	0.0400	0.0180	**1.5480**	**1.5508**

변 경 후

집합투자업자 보수	판매회사보수	수탁회사보수	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	**총 보수**	**총보수·비용** 주 2)
0.5400	0.9500	0.0300	0.0180	**1.5380**	**1.5408**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(제 2 호)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보수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2 월 14 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39 조(보수)	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[종류 A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5.826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7.374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4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8 [종류 C1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5.826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5.0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4	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[종류 A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5.40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5.274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0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8 [종류 C1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5.40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2.50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0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8

	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8 [종류 C2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5.826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3.75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4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8 [종류 C3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5.826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2.5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4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8 [종류 C4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5.826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1.25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4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8 [종류 C5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5.826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0.0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4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8 [종류 C-E 수익증권]	[종류 C2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5.40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1.25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0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8 [종류 C3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5.40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0.00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0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8 [종류 C4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5.40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8.75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0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8 [종류 C5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5.40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7.50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0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8 [종류 C-E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5.40 2.판매회사보수율 : 가. 2010 년 10 월 18 일부터 2011 년 10 월 17 일까지 : 연 1000 분의 12.906 나. 2011 년 10 일 18 일부터

	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5.826 2.판매회사보수율 : 가. 2010 년 10 월 18 일부터 2011 년 10 월 17 일까지 : 연 1000 분의 12.906 나. 2011 년 10 일 18 일부터 2012 년 10 월 17 일까지 : 연 1000 분의 11.937 다. 2012 년 10 월 18 일부터 2013 년 10 월 17 일까지 : 연 1000 분의 10.969 라. 2013 년 10 월 18 일부터 : 연 1000 분의 10.0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4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8	2012 년 10 월 17 일까지 : 연 1000 분의 11.937 다. 2012 년 10 월 18 일부터 2013 년 10 월 17 일까지 : 연 1000 분의 10.969 라. 2013 년 10 월 18 일부터 2020 년 02 월 13 일까지 : 연 1000 분의 10.0 마. 2020 년 02 월 14 일부터 : 연 1000 분의 5.00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0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8

[간이투자설명서]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변 경 전</th><th>변 경 후</th></tr>
<tr><td>[요약정보]</td><td>투자비용
(생략)
<table><tr><th></th><th colspan="3">투자자가 부담하는
수수료 및 총보수 (연간, %)</th></tr><tr><th></th><th>판매
수수료</th><th>총
보수</th><th>판매
보수</th></tr><tr><td>(A)</td><td>납입금액의
1.0% 이내</td><td>1.3780</td><td>0.7374</td></tr><tr><td>(C1)</td><td>없음</td><td>2.1406</td><td>1.5000</td></tr><tr><td>(C-E)</td><td>없음</td><td>1.6406</td><td>1.0000</td></tr></table>
1,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
(생략)</td><td>투자비용
(업데이트)
<table><tr><th></th><th colspan="3">투자자가 부담하는
수수료 및 총보수 (연간, %)</th></tr><tr><th></th><th>판매
수수료</th><th>총
보수</th><th>판매
보수</th></tr><tr><td>(A)</td><td>납입금액의
1.0% 이내</td><td>1.1154</td><td>0.5274</td></tr><tr><td>(C1)</td><td>없음</td><td>1.8380</td><td>1.2500</td></tr><tr><td>(C-E)</td><td>없음</td><td>1.0880</td><td>0.5000</td></tr></table>
1,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
(업데이트)</td></tr>
</table>

	운용전문인력 (생략)	**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변 경 전</th><th>변 경 후</th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(추가)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2020 년 02 월 14 일
- 보수 변경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운용전문인력
(생략)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운용전문인력
(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<table>
<tr><th></th><th>집합투자업자 보수</th><th>판매회사보수</th><th>수탁회사보수</th><th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</th><th>총 보수</th><th>총보수·비용 주 2)</th></tr>
<tr><td>A</td><td>0.5826</td><td>0.7374</td><td>0.0400</td><td>0.0180</td><td>1.3780</td><td>1.3815</td></tr>
<tr><td>C1</td><td>0.5826</td><td>1.5000</td><td>0.0400</td><td>0.0180</td><td>2.1406</td><td>2.1406</td></tr>
<tr><td>C2</td><td>0.5826</td><td>1.3750</td><td>0.0400</td><td>0.0180</td><td>2.0156</td><td>2.0156</td></tr>
<tr><td>C3</td><td>0.5826</td><td>1.2500</td><td>0.0400</td><td>0.0180</td><td>1.8906</td><td>1.8906</td></tr>
<tr><td>C4</td><td>0.5826</td><td>1.1250</td><td>0.0400</td><td>0.0180</td><td>1.7656</td><td>1.7656</td></tr>
<tr><td>C5</td><td>0.5826</td><td>1.0000</td><td>0.0400</td><td>0.0180</td><td>1.6406</td><td>1.6406</td></tr>
<tr><td>C-E</td><td>0.5826</td><td>1.0000</td><td>0.0400</td><td>0.0180</td><td>1.6406</td><td>1.6441</td></tr>
</table>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(단위: 1,000 원)
(생략)</td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<table>
<tr><th></th><th>집합투자업자 보수</th><th>판매회사보수</th><th>수탁회사보수</th><th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</th><th>총 보수</th><th>총보수·비용 주 2)</th></tr>
<tr><td>A</td><td>0.5400</td><td>0.5270</td><td>0.0300</td><td>0.0180</td><td>1.1154</td><td>1.1189</td></tr>
<tr><td>C1</td><td>0.5400</td><td>1.2500</td><td>0.0300</td><td>0.0180</td><td>1.8380</td><td>1.8380</td></tr>
<tr><td>C2</td><td>0.5400</td><td>1.1250</td><td>0.0300</td><td>0.0180</td><td>1.7130</td><td>1.7130</td></tr>
<tr><td>C3</td><td>0.5400</td><td>1.0000</td><td>0.0300</td><td>0.0180</td><td>1.5880</td><td>1.5880</td></tr>
<tr><td>C4</td><td>0.5400</td><td>0.8750</td><td>0.0300</td><td>0.0180</td><td>1.4630</td><td>1.4630</td></tr>
<tr><td>C5</td><td>0.5400</td><td>0.7500</td><td>0.0300</td><td>0.0180</td><td>1.3380</td><td>1.3380</td></tr>
<tr><td>C-E</td><td>0.5400</td><td>0.5000</td><td>0.0300</td><td>0.0180</td><td>1.0880</td><td>1.0915</td></tr>
</table>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(단위: 1,000 원)
(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 4 부
집합투자기구
관련회사에
관한 사항</td><td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<td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</tr>
</table>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모투자신탁 추가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2 월 14 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)	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추가>	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2. 하나 UBS First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
제 18 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"하나 UBS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"의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시장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상으로 하며, 그 비율은 모투자신탁의 해당 주식 보유비율에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.	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제 3 조제 4 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시장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상으로 하며, 그 비율은 모투자신탁의 해당 주식 보유비율에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.
제 39 조의 2(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)	<신설>	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한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 보수중 50%(연 1000 분의 0.15)에 해당하는

		금액(이하'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')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.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.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목적 및 전략** **[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]** <추가>	**투자목적 및 전략** **[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]** 모투자신탁 명칭: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 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: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,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.
	투자비용 (생략)	**투자비용** (업데이트)
	운용전문인력 (생략)	**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**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[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] <추가>	**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[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]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

<table>
<tr><td></td><td></td><td>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 (BJ953)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(추가)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2020 년 02 월 14 일
- 모투자신탁 추가(하나 UBS First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)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운용전문인력
(생략)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운용전문인력
(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다. 모자형구조
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.
<table>
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 비율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</td><td>90% 이상</td></tr>
</table>

<추가>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나. 모자형구조
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]
<table>
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 비율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</td><td>90% 이상</td></tr>
</table>
<table>
<tr><th colspan="2">모투자신탁명</th><th>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</td><td>주요투자대상</td><td>주식 60% 이상, 채권 40% 이하</td></tr>
<tr><td>투자목적</td><td>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,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.</td></tr>
<tr><td>주요투자전략 및</td><td>국내 주식에 60% 이상을 투자하여 조직적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></td><td></td><td><table><tr><td>위험관리</td><td>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의 최소화를 추구합니다.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가. 자집합투자기구
(1) 투자대상
<table>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비율</th><th>투자대상 내역</th></tr><tr><td>하나 UBS 코리아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</td><td>90% 이상</td><td>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%이상을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</td></tr></table>
나. 모집합투자기구
<추가></td><td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가. 자집합투자기구
(1) 투자대상
<table>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비율</th><th>투자대상 내역</th></tr><tr><td>하나 UBS 코리아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</td><td rowspan="2">90% 이상</td><td>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%이상을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</td></tr><tr><td>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</td><td>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</td></tr></table>
나. 모집합투자기구
- 하나 UBS First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
<별첨 1 참조>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
가. 투자전략
(1)모투자신탁에의 투자
<table>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비율</th></tr><tr><td>하나 UBS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</td><td>90% 이상</td></tr></table>
[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]
(생략)</td><td>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
가. 투자전략
(1)모투자신탁에의 투자
<table>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비율</th></tr><tr><td>하나 UBS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하나 UBS First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</td><td>90% 이상</td></tr></table>
[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]</td></tr>
</table>

		<별첨 2 참조>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 별첨 1]

(1)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)

투자대상	투자비율	투자대상 내역
1.주식	60%이상	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(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함)
2.채권	40%이하	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)
3.자산유동화증권	40%이하	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
4.어음	40%이하	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,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(취득시 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- 이상)
5.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	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, 채권이나 주식·채권의 가격, 이자율, 지표,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	
6.금리스왑거래	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%이하	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
7.집합투자증권 등	5% 이하 단, 상장지수집합투	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),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

	자기구는 30%까지 투자가능	
8.환매조건부 매매	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% 이하	
9.증권의 대여	증권 총액의 50%이하	
10.증권의 차입	주식, 채권, 자산유동화증권,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이하	
11.기타	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	
유동성자산	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. 단기대출 (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) 나. 금융기관에의 예치(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)	

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, 채권,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. 다만,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.

1.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
2.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
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
4.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
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

(2) 투자제한

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구분	내용	적용예외
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	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)로 운용할 수 없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.	
동일종목 투자	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, 법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,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, 대출채권・예금・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(債權)을 포함한다)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	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

	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. 다만,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 가. 국채증권,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%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,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(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・매매・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), 파생결합증권,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, 같은 호 가목・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) 또는 어음,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 32 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(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)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・예탁하여 취득한 채권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.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시가총액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	

	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.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,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합니다.	
동일회사 발행 주식 투자	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.	
계열회사 발행 증권 투자	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.	
파생상품 투자	-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. -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-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	최초설정일로부터 1 월간
	법 시행령 제 80 조 제 5 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	

[투자설명서 별첨 2]

-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

가. 투자전략

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,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.

그러나,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

■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

=> 기본포트폴리오 영역과 전술적 자산배분 영역으로 이원화

구 분	Style	투 자 Horizon	매 매 형 태	주 식 편입비	세 부 내 용
기 본 포트폴리오 영 역	내재가치 우량주, 성장주 중심	1년	Buy & Hold	주식총액의 70% 수준	-모델(애널리스트)포트폴리오를 근간으로 장기적 관점의 포트폴리오 구성 -장기적 성장 잠재력, 해당산업의 Life cycle, 시장지배력, 기업지배구조 등 감안 -안정적인 초과수익률 달성과 주가차별화 양상 감안하여 내재가치우량주 및 성장주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 -매매회전율을 가급적 줄이고 기본적으로 Buy & Hold의 매매패턴 견지
전 술 적 자산 배분 영 역	경기민감주, 고베타주, 고배당주, 시장테마주 등	중단기 (~6개월)	Short-term Trading	주식총액의 0~30% 수준	-시장 흐름 변화에 대응, 탄력적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-기본적으로 상승국면에서 초과수익을 낼 수 있는 경기민감주, 고베타주 중심으로 매수하고 하락국면 전환 예상시 매도 -시장상황에 따라 시장테마주 등 선제적 대응 등 적극적인 매매패턴 구사

- 단.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

■ Bottom-up Approach 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

- Bottom-up Approach 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
-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

■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

-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
- In –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

나. 비교지수(Benchmark) : **KOSPI 수익률 X 100%**

주 1)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주식형집합투자기구로서, 성과비교를 위하여 **KOSPI X 100%**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,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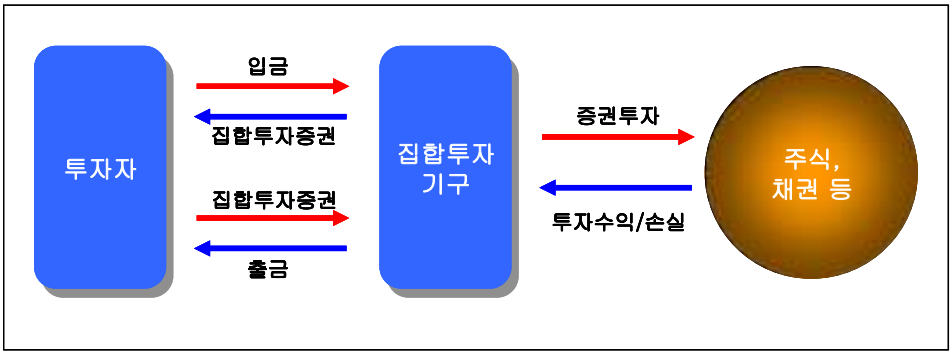
주 2)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.

다. 위험관리

-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
 - ·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
 - · Risk Control 팀,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

라. 수익구조

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(주식)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.



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She&Style 증권자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보수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2 월 14 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39 조(보수)	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[종류 A, C, S, AG, CG 수익증권]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5.826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4	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[종류 A, C, S, AG, CG 수익증권]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5.400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(연간, %)**	**투자비용** (업데이트) **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(연간, %)**

	<table><tr><th></th><th>판매 수수료</th><th>총 보수</th><th>판매 보수</th></tr><tr><td>(A)</td><td>납입금액의 1.0% 이내</td><td>1.0000</td><td>0.3594</td></tr><tr><td>(C)</td><td>없음</td><td>1.6406</td><td>1.0000</td></tr></table> 1,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<table><tr><th></th><th>판매 수수료</th><th>총 보수</th><th>판매 보수</th></tr><tr><td>(A)</td><td>납입금액의 1.0% 이내</td><td>0.9474</td><td>0.3594</td></tr><tr><td>(C)</td><td>없음</td><td>1.5880</td><td>1.0000</td></tr></table> 1,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02 월 14 일 - 보수 변경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(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table><tr><th></th><th>집합투자업자 보수</th><th>판매회사보수</th><th>수탁회사보수</th><th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</th><th>총 보수</th><th>총보수·비용 주 2)</th></tr><tr><td>A</td><td>0.5826</td><td>0.3594</td><td>0.0400</td><td>0.0180</td><td>**1.0000**</td><td>**1.0000**</td></tr><tr><td>C</td><td>0.5826</td><td>1.0000</td><td>0.0400</td><td>0.0180</td><td>**1.6406**</td><td>**1.6433**</td></tr><tr><td>S</td><td>0.5826</td><td>0.3500</td><td>0.0400</td><td>0.0180</td><td>**0.9906**</td><td>**0.9906**</td></tr><tr><td>AG</td><td>0.5826</td><td>0.1700</td><td>0.0400</td><td>0.0180</td><td>**0.8106**</td><td>**0.8106**</td></tr><tr><td>CG</td><td>0.5826</td><td>0.5000</td><td>0.0400</td><td>0.0180</td><td>**1.1406**</td><td>**1.1406**</td></tr></table>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(단위: 1,000 원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table><tr><th></th><th>집합투자업자 보수</th><th>판매회사보수</th><th>수탁회사보수</th><th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</th><th>총 보수</th><th>총보수·비용 주 2)</th></tr><tr><td>A</td><td>0.5400</td><td>0.3594</td><td>0.0300</td><td>0.0180</td><td>**0.9474**</td><td>**0.9474**</td></tr><tr><td>C</td><td>0.5400</td><td>1.0000</td><td>0.0300</td><td>0.0180</td><td>**1.5880**</td><td>**1.5907**</td></tr><tr><td>S</td><td>0.5400</td><td>0.3500</td><td>0.0300</td><td>0.0180</td><td>**0.9380**</td><td>**0.9380**</td></tr><tr><td>AG</td><td>0.5400</td><td>0.1700</td><td>0.0300</td><td>0.0180</td><td>**0.7580**</td><td>**0.7580**</td></tr><tr><td>CG</td><td>0.5400</td><td>0.5000</td><td>0.0300</td><td>0.0180</td><td>**1.0880**</td><td>**1.0880**</td></tr></table>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(단위: 1,000 원)

	(생략)	(업데이트)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가족사랑짱적립식증권자투자신탁(K-1호)[주식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 :

- 모투자신탁 추가
- 보수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년 02월 14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)	③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~2 (생략) 3. 하나UBS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	③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~2 (생략, 현행과 동일) 3. 하나UBS First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1호)[주식] 4. 하나UBS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이상으로 한다. 2. 제3조제3항제3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미만으로 한다.	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이상으로 한다. 2. 제3조제3항제4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미만으로 한다.
제 39 조(보수)	제3항 [종류 A. C1. C2. C3. C4. C5. C-E 수익증권]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6.546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4 [종류 C1 수익증권]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5.0	제3항 [종류 A. C1. C2. C3. C4. C5. C-E 수익증권]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5.40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 [종류 C1 수익증권]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2.5

	[종류 C2 수익증권]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3.625 [종류 C3 수익증권]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2.25 [종류 C4 수익증권]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0.875 [종류 C5 수익증권]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9.5 [종류C-E 수익증권]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7.674	[종류 C2 수익증권]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1.25 [종류 C3 수익증권]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0.0 [종류 C4 수익증권]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8.75 [종류 C5 수익증권]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7.5 [종류C-E 수익증권]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5.0
제 39 조의 2(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)	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한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 보수 중 50%(연 1000 분의 0.20)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'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')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.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.	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한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 보수중 50%(연 1000 분의 0.15)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'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')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.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.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목적 및 전략** **[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]** <추가>	**투자목적 및 전략** **[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]** 모투자신탁 \| 하나UBS First 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1호)[주식]

<table>
<tr><td></td><td></td><td>
<table>
<tr><td>명칭</td><td></td></tr>
<tr><td>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</td><td>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,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.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</td><td>
투자비용
<table>
<tr><th rowspan="2">클래스 종류</th><th colspan="3">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(연간, %)</th></tr>
<tr><th>판매 수수료</th><th>총 보수</th><th>판매 보수</th></tr>
<tr><td>(A)</td><td>납입금액의 1.0% 이내</td><td>1.2400</td><td>0.5274</td></tr>
<tr><td>(C1)</td><td>없음</td><td>2.2126</td><td>1.5000</td></tr>
<tr><td>(C-E)</td><td>없음</td><td>1.4800</td><td>0.7674</td></tr>
</table>
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
(생략)
</td><td>
투자비용
<table>
<tr><th rowspan="2">클래스 종류</th><th colspan="3">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(연간, %)</th></tr>
<tr><th>판매 수수료</th><th>총 보수</th><th>판매 보수</th></tr>
<tr><td>(A)</td><td>납입금액의 1.0% 이내</td><td>1.1634</td><td>0.5274</td></tr>
<tr><td>(C1)</td><td>없음</td><td>1.8380</td><td>1.2500</td></tr>
<tr><td>(C-E)</td><td>없음</td><td>1.0880</td><td>0.5000</td></tr>
</table>
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
(업데이트)
</td></tr>
<tr><td></td><td>운용전문인력
(생략)</td><td>운용전문인력
(업데이트)</td></tr>
</table>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<추가>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02 월 14 일 - 모투자신탁 (하나UBS First 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1호)[주식]) 추가 - 보수 변경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
<table>
<tr>
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
<td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
다. 모자형구조

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<table>
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비율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모투자신탁[주식혼합]
하나 UBS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</td><td>50% 이상</td></tr>
</table>
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]

(추가)
</td>
<td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
다. 모자형구조

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<table>
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비율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모투자신탁[주식혼합]
하나 UBS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</td><td>50% 이상</td></tr>
</table>
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]

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

<별첨 1 참조>
</td>
</tr>
<tr>
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
<td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
[자집합투자기구]

가. 투자대상
<table>
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비율</th><th>투자대상 내역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모투자신탁[주식혼합]
하나 UBS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</td><td>50% 이상</td><td>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</td></tr>
</table>
[모집합투자기구]

(추가)
</td>
<td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
[자집합투자기구]

가. 투자대상
<table>
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비율</th><th>투자대상 내역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모투자신탁[주식혼합]
하나 UBS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</td><td>50% 이상</td><td>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</td></tr>
</table>
[모집합투자기구]

-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
</td>
</tr>
</table>

		<별첨 2 참조>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** **[모집합투자기구]** (생략)	**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** **[모집합투자기구]** <별첨 3 참조>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별첨 4 참조>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(단위: 1,000 원)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별첨 4 참조>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(단위: 1,000 원) (업데이트)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<별첨1>

모투자신탁명	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	
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	주요투자대상	주식 60% 이상, 어음 40% 이하
	투자목적	투자신탁재산의 60%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하고,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에 40%이하, 어음에 40%이하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및 이자수익을 추구
	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	국내 주식에 60% 이상을 투자하여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의 최소화를 추구합니다.

<별첨2>

-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

투자대상	투자비율	투자대상 내역
1.주식	60%이상	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(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함)
2.채권	40%이하	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)
3.자산유동화 증권	40%이하	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
4.어음	40%이하	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,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(취득시 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- 이상)

5.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	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, 채권이나 주식·채권의 가격, 이자율, 지표,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	
6.금리스왑거래	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%이하	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
7.집합투자증권 등	5% 이하 단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30%까지 투자가능	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),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
8.환매조건부 매매	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% 이하	
9.증권의 대여	증권 총액의 50%이하	
10.증권의 차입	주식, 채권, 자산유동화증권,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이하	
11.기타	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	
유동성자산	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. 단기대출 (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) 나. 금융기관에의 예치(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)	

구분	내용	적용예외
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	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)로 운용할 수 없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.	
동일종목 투자	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,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,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, 대출채권·예금·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(債權)을 포함한다)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. 다만,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	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

	가. 국채증권,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%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,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(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・매매・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), 파생결합증권,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, 같은 호 가목・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) 또는 어음,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 32 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(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)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・예탁하여 취득한 채권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.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.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	

	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,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.	
동일회사 발행 주식 투자	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.	
계열회사 발행 증권 투자	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.	
파생상품 투자	-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. -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-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	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
	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	

<별첨 3>

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

가. 투자전략

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,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.

그러나,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

■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

=> 기본포트폴리오 영역과 전술적 자산배분 영역으로 이원화

구 분	Style	투 자 Horizon	매 매 형 태	주 식 편입비	세 부 내 용
기 본 포트폴리오 영 역	내재가치 우량주, 성장주 중심	1년	Buy & Hold	주식총액의 70% 수준	-모델(애널리스트)포트폴리오를 근간으로 장기적 관점의 포트폴리오 구성 -장기적 성장 잠재력, 해당산업의 Life cycle, 시장지배력, 기업지배구조 등 감안 -안정적인 초과수익률 달성과 주가차별화 양상 감안하여 내재가치우량주 및 성장주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 -매매회전율을 가급적 줄이고 기본적으로 Buy & Hold의 매매패턴 견지
전 술 적 자산 배분 영 역	경기민감주, 고베타주, 고배당주, 시장테마주 등	중단기 (~6개월)	Short- term Trading	주식총액의 0~30% 수준	-시장 흐름 변화에 대응, 탄력적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-기본적으로 상승국면에서 초과수익을 낼 수 있는 경기민감주, 고베타주 중심으로 매수하고 하락국면 전환 예상시 매도 -시장상황에 따라 시장테마주 등 선제적 대응 등 적극적인 매매패턴 구사

- 단.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

■ Bottom-up Approach 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

- Bottom-up Approach 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
-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

■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

-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
- In –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

나. 비교지수(Benchmark) : **KOSPI 수익률 X 100%**

주 1)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주식형집합투자기구로서, 성과비교를 위하여 **KOSPI X 100%**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,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.

주2)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.

다. 위험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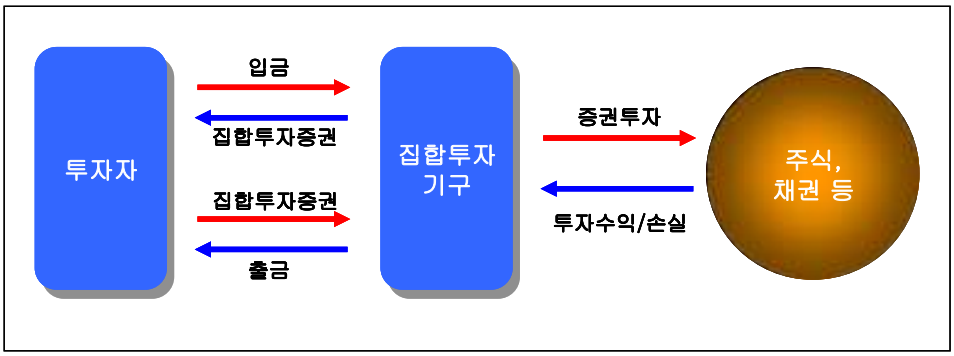
-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

·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

· Risk Control 팀,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

라. 수익구조

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(주식)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.



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

<별첨 4>

(변경 전)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
종류형 명칭		지급비율(연간, %)								
		집합투자업자보수	판매회사 보수	수탁회사 보수	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	**총 보수**	기타비용[주1]	**총보수·비용[주2]**	(동종유형 총 보수)[주3]	증권거래비용[주4]
A	수수료선취-오프라인	0.6546	0.5274	0.0400	0.0180	**1.2400**	실비	**1.2400**	1.38	실비
C1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	0.6546	1.5000	0.0400	0.0180	**2.2126**	0.0000	**2.2126**	1.59	0.0000
C2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	0.6546	1.3625	0.0400	0.0180	**2.0751**	0.0000	**2.0751**	-	0.0000
C3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	0.6546	1.2250	0.0400	0.0180	**1.9376**	0.0000	**1.9376**	-	0.0000
C4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	0.6546	1.0875	0.0400	0.0180	**1.8001**	0.0000	**1.8001**	-	0.2502
C5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	0.6546	0.9500	0.0400	0.0180	**1.6626**	0.0025	**1.6651**	-	0.2264
C-E	수수료미징구-온라인	0.6546	0.7674	0.0400	0.0180	**1.4800**	0.0000	**1.4800**	1.21	0.0000
지급시기		3 개월 후급, 신탁의 전부해지 시					사유 발생시			사유 발생시

(변경 후)

종류형 명칭	지급비율(연간, %)

		집합투자업자보수	판매회사 보수	수탁회사 보수	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	**총 보수**	기타비용[주1)]	**총보수·비용[주2)]**	(동종유형 총 보수)[주3)]	증권거래비용[주4)]
A	수수료선취-오프라인	0.5400	0.5274	0.0300	0.0180	**1.1154**	실비	**1.1634**	1.38	실비
C1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	0.5400	1.2500	0.0300	0.0180	**1.8380**	0.0000	**1.8380**	1.59	0.0000
C2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	0.5400	1.1250	0.0300	0.0180	**1.7130**	0.0000	**1.7130**	-	0.0000
C3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	0.5400	1.0000	0.0300	0.0180	**1.5880**	0.0000	**1.5880**	-	0.0000
C4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	0.5400	0.8750	0.0300	0.0180	**1.4630**	0.0000	**1.4630**	-	0.2502
C5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	0.5400	0.7500	0.0300	0.0180	**1.3380**	0.0025	**1.3405**	-	0.2264
C-E	수수료미징구-온라인	0.5400	0.5000	0.0300	0.0180	**1.0880**	0.0000	**1.0880**	1.21	0.0000
지급시기		3 개월 후급, 신탁의 전부해지 시					사유 발생시			사유 발생시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글로벌롱숏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- 책임운용인력 추가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2 월 14 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책임 : 이장호	**투자비용** (업데이트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책임 :이장호, 이혜민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02 월 14 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- 책임운용인력 추가(이혜민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책임 : 이장호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책임 : 이장호, 이혜민

	나.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(생략)	나. 최근 3 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(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3.74%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3.15%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 3 부 집합투자기구 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인 Best 연금글로벌롱숏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
- 책임운용인력 추가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02 월 14 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책임 : 이장호	**투자비용** (업데이트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책임 :이장호, 이혜민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02 월 14 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- 책임운용인력 추가(이혜민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책임 : 이장호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운용전문인력 책임 : 이장호, 이혜민

	나.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(생략)	나. 최근 3 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(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3.73%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3.17%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 :

- 모투자신탁 추가
- 보수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년 02월 14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)	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략) <추가>	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략, 현행과 동일) 2. 하나UBS First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1호)[주식]
제 39 조(보수)	제3항 [종류 A. C1. C2. C3. C4. C5. C-F, C-E, S, AG, CG 수익증권]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7.5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 [종류A 수익증권]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0.0 [종류 C1 수익증권]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5.0 [종류 C2 수익증권]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4.0 [종류 C3 수익증권]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3.0 [종류 C4 수익증권]	제3항 [종류 A. C1. C2. C3. C4. C5. C-F, C-E, S, AG, CG 수익증권]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5.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8 [종류A 수익증권]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5.274 [종류 C1 수익증권]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2.5 [종류 C2 수익증권]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1.25 [종류 C3 수익증권]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0.0 [종류 C4 수익증권]

	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2.0 [종류 C5 수익증권]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0.0 [종류C-F 수익증권]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0 [종류C-E 수익증권] 2.판매회사보수율 3)2013년 10월 18일 이후 : 연 1000분의 10.00 [종류AG 수익증권]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5.0 [종류CG 수익증권]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0.0	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8.75 [종류 C5 수익증권]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7.5 [종류C-F 수익증권]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 [종류C-E 수익증권] 2.판매회사보수율 3)2013년 10월 18일부터 2020년 02월 13일까지 : 연 1000분의 10.00 4) 2020년 02월 14일이후 : 연 1000분의 5.0 [종류AG 수익증권]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.7 [종류CG 수익증권]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5.0
제 39 조의 2(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)	(신설)	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한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 보수중 50%(연 1000 분의 0.10)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'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')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.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.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
<table>
<tr><td>[요약정보]</td><td>투자목적 및 전략
[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]
<추가></td><td>투자목적 및 전략
[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]<table><tr><td>모투자신탁 명칭</td><td>하나UBS First 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1호)[주식]</td></tr><tr><td>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</td><td>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,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.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</td><td>투자비용<table><tr><th rowspan="2">클래스 종류</th><th colspan="3">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(연간, %)</th></tr><tr><th>판매 수수료</th><th>총 보수</th><th>판매 보수</th></tr><tr><td>(A)</td><td>납입금액의 1.0% 이내</td><td>1.790</td><td>1.000</td></tr><tr><td>(C1)</td><td>없음</td><td>2.290</td><td>1.500</td></tr><tr><td>(C-E)</td><td>없음</td><td>1.790</td><td>1.000</td></tr></table>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
(생략)

* [A형과 C1형]의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[약 3년]이나, 이는 추가납입,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/td><td>투자비용<table><tr><th rowspan="2">클래스 종류</th><th colspan="3">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(연간, %)</th></tr><tr><th>판매 수수료</th><th>총 보수</th><th>판매 보수</th></tr><tr><td>(A)</td><td>납입금액의 1.0% 이내</td><td>1.1054</td><td>0.5274</td></tr><tr><td>(C1)</td><td>없음</td><td>1.8280</td><td>1.2500</td></tr><tr><td>(C-E)</td><td>없음</td><td>1.0780</td><td>0.5000</td></tr></table>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
(업데이트)

* [A형과 C1형]의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[약 2년]이나, 이는 추가납입,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/td></tr>
<tr><td></td><td>운용전문인력
(생략)</td><td>운용전문인력
(업데이트)</td></tr>
</table>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<추가>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02 월 14 일 - 모투자신탁 (하나UBS First 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1호)[주식])

<table>
<tr><td></td><td></td><td>추가
- 보수 변경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(생략)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(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다. 모자형구조
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.
<table>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비율</th></tr><tr><td>하나 UBS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</td><td>90% 이상</td></tr></table>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다. 모자형구조
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.
<table>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비율</th></tr><tr><td>하나 UBS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하나 UBS First Class 연금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</td><td>90% 이상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가. 자집합투자기구
(1) 투자대상
<table>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비율</th><th>투자대상 내역</th></tr><tr><td>하나 UBS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</td><td>90% 이상</td><td>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%이상을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</td></tr></table>
나. 모집합투자기구
(추가)</td><td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가. 자집합투자기구
(1) 투자대상
<table>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비율</th><th>투자대상 내역</th></tr><tr><td>하나 UBS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</td><td rowspan="2">90% 이상</td><td>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%이상을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</td></tr><tr><td>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</td><td>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</td></tr></table>
나. 모집합투자기구
-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

<별첨 1 참조>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
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
<td>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

가. 투자전략

모투자신탁에의 투자
<table>
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비율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</td><td>90% 이상</td></tr>
</table>
[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]

(생략)
</td>
<td>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

가. 투자전략

모투자신탁에의 투자
<table>
<tr><th>투자대상</th><th>투자비율</th></tr>
<tr><td>하나 UBS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</td><td>90% 이상</td></tr>
</table>
[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]

<별첨 2 참조>
</td>
</tr>
<tr>
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
<td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
<별첨 3 참조>
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(단위: 1,000 원)

(생략)

주 2) [A 형과 C1 형]의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[약 3 년]이나, 이는 추가 납입,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/td>
<td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
<별첨 3 참조>
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(단위: 1,000 원)

(업데이트)

주 2) [A 형과 C1 형]의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[약 2 년]이나, 이는 추가 납입,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/td>
</tr>
<tr>
<td>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td>
<td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
라. 운용자산규모

(생략)
</td>
<td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
라. 운용자산규모

(업데이트)
</td>
</tr>
</table>

<별첨1>

-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

(1)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)

투자대상	투자비율	투자대상 내역
1.주식	60%이상	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(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함)
2.채권	40%이하	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)
3.자산유동화증권	40%이하	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
4.어음	40%이하	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,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(취득시 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- 이상)
5.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	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, 채권이나 주식·채권의 가격, 이자율, 지표,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	
6.금리스왑거래	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%이하	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
7.집합투자증권 등	5% 이하 단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30%까지 투자가능	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),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

8.환매조건부 매매	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% 이하
9.증권의 대여	증권 총액의 50%이하
10.증권의 차입	주식, 채권, 자산유동화증권,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이하
11.기타	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
유동성자산	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. 단기대출 (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) 나. 금융기관에의 예치(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)

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, 채권,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. 다만,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.

1.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
2.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
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
4.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
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

(2) 투자제한

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구분	내용	적용예외
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	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)로 운용할 수 없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.	
동일종목 투자	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,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,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, 대출채권·예금·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(債權)을 포함한다)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. 다만,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	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

	투자할 수 있습니다. 가. 국채증권,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%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,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(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・매매・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), 파생결합증권,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, 같은 호 가목・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) 또는 어음,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 32 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(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)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・예탁하여 취득한 채권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.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.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	

	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,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.	
동일회사 발행 주식 투자	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.	
계열회사 발행 증권 투자	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.	
파생상품 투자	-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. -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-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	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
	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	

<별첨 2>

- 하나 UBS First Class 연금 증권모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

가. 투자전략

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,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.

그러나,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

■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

=> 기본포트폴리오 영역과 전술적 자산배분 영역으로 이원화

구 분	Style	투 자 Horizon	매 매 형 태	주 식 편입비	세 부 내 용
기 본 포트폴리오 영 역	내재가치 우량주, 성장주 중심	1년	Buy & Hold	주식총액의 70% 수준	-모델(애널리스트)포트폴리오를 근간으로 장기적 관점의 포트폴리오 구성 -장기적 성장 잠재력, 해당산업의 Life cycle, 시장지배력, 기업지배구조 등 감안 -안정적인 초과수익률 달성과 주가차별화 양상 감안하여 내재가치우량주 및 성장주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 -매매회전율을 가급적 줄이고 기본적으로 Buy & Hold의 매매패턴 견지
전 술 적 자산 배분 영 역	경기민감주, 고베타주, 고배당주, 시장테마주 등	중단기 (~6개월)	Short- term Trading	주식총액의 0~30% 수준	-시장 흐름 변화에 대응, 탄력적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-기본적으로 상승국면에서 초과수익을 낼 수 있는 경기민감주, 고베타주 중심으로 매수하고 하락국면 전환 예상시 매도 -시장상황에 따라 시장테마주 등 선제적 대응 등 적극적인 매매패턴 구사

- 단.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

■ Bottom-up Approach 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

- Bottom-up Approach 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
-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

■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

-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
- In –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

나. 비교지수(Benchmark) : **KOSPI 수익률 X 100%**

주 1)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주식형집합투자기구로서, 성과비교를 위하여 **KOSPI X 100%**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,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.

주2)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.

다. 위험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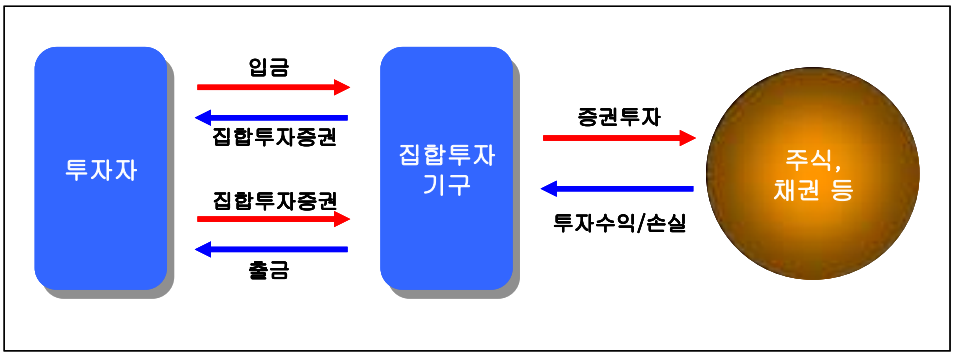
-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

·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

· Risk Control 팀,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

라. 수익구조

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(주식)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.



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

<별첨 3>

(변경 전)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
종류형 명칭		지급비율(연간, %)									
		집합투자업자보수	판매회사보수	수탁회사보수	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	**총 보수**	기타비용 주1)	**총보수·비용 주2)**	(동종유형 총 보수) 주3)	**합성 총보수 및 비용**	증권거래비용 주4)
A	수수료선취-오프라인	0.750	1.000	0.020	0.020	**1.790**	0.003	**1.793**	1.38	**1.793**	0.540
C1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	0.750	1.500	0.020	0.020	**2.290**	0.000	**2.290**	1.59	**2.290**	0.000
C2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	0.750	1.400	0.020	0.020	**2.190**	0.000	**2.190**	-	**2.190**	0.000
C3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	0.750	1.300	0.020	0.020	**2.090**	0.000	**2.090**	-	**2.090**	0.345
C4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	0.750	1.200	0.020	0.020	**1.990**	0.000	**1.990**	-	**1.990**	0.675
C5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	0.750	1.000	0.020	0.020	**1.790**	0.002	**1.792**	-	**1.792**	0.543
C-E	수수료미징구-온라인	0.750	1.000	0.020	0.020	**1.790**	0.002	**1.792**	1.21	**1.792**	0.541
C-F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	0.750	0.200	0.020	0.020	**0.990**	0.003	**0.993**	-	**0.993**	0.506
S	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	0.750	0.350	0.020	0.020	**1.140**	0.000	**1.140**	-	**1.140**	0.506
AG	수수료선취-오프라인-무권유저비용	0.750	0.500	0.020	0.020	**1.290**	실비	**1.290**	-	**1.793**	실비
CG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무	0.750	1.000	0.020	0.020	**1.790**	실비	**1.790**	-	**1.790**	실비

	권유저비용										
지급시기		3 개월 후급, 신탁의 일부 또는 전부해지 시					사유 발생시				사유 발생시

(변경 후)

종류형 명칭		지급비율(연간, %)									
		집합투자업자보수	판매회사보수	수탁회사보수	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	**총 보수**	기타비용 주1)	**총보수·비용 주2)**	(동종유형 총 보수) 주3)	**합성 총보수 및 비용**	증권거래비용 주4)
A	수수료선취-오프라인	0.5400	0.5274	0.0200	0.0180	**1.1054**	0.0030	**1.1084**	1.3800	**1.1084**	0.5400
C1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	0.5400	1.2500	0.0200	0.0180	**1.8280**	0.0000	**1.8280**	1.5900	**1.8280**	0.0000
C2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	0.5400	1.1250	0.0200	0.0180	**1.7030**	0.0000	**1.7030**	-	**1.7030**	0.0000
C3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	0.5400	1.0000	0.0200	0.0180	**1.5780**	0.0000	**1.5780**	-	**1.5780**	0.3450
C4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	0.5400	0.8750	0.0200	0.0180	**1.4530**	0.0000	**1.4530**	-	**1.4530**	0.6750
C5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보수체감	0.5400	0.7500	0.0200	0.0180	**1.3280**	0.0020	**1.3300**	-	**1.3300**	0.5430
C-E	수수료미징구-온라인	0.5400	0.5000	0.0200	0.0180	**1.0780**	0.0020	**1.0800**	1.2100	**1.0800**	0.5410
C-F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	0.5400	0.0300	0.0200	0.0180	**0.6080**	0.0030	**0.6110**	-	**0.6110**	0.5060
S	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	0.5400	0.3500	0.0200	0.0180	**0.9280**	0.0000	**0.9280**	-	**0.9280**	0.5060
AG	수수료선취-오프라인-무권유저비용	0.5400	0.1700	0.0200	0.0180	**0.7480**	실비	**0.7480**	-	**0.7480**	실비
CG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무권유저비용	0.5400	0.5000	0.0200	0.0180	**1.0780**	실비	**1.0780**	-	**1.0780**	실비
지급시기		3 개월 후급, 신탁의 일부 또는 전부해지 시					사유 발생시				사유 발생시